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102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9. 07. ~ 2023. 09. 20.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채납자 주소
1	김대훈	1981.○.21.	채권(예금)	₩7,236,000	부산 남구 고동골로 4 번길 ○○
2	주식회사 홍익디앤씨	230111-0252864	채권(예금)	₩3,975,060	울산 남구 삼산로 231, 울산센트럴자이 상업시설 더 테라스가든 409-2 호
3	주식회사 꽃뿐이네	180111-1168326	채권(예금)	₩12,186,000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124 번길 39, 403 호
4	이상수	1994.○.25.	채권(예금)	₩4,987,500	부산 사하구 오작로 ○○
5	박준걸	1988.○.28.	채권(예금)	₩9,075,000	인천 계양구 장제로 ○○
6	변재복	1980.○.11.	채권(예금)	₩3,862,500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218 번 길 ○○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채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